

17 世紀国際法 「独島は朝鮮の土地」

2018.01.10 東亜日報

朴炳涉 在日独島研究者 「1699 年韓日国境条約に明示」

近代以前、東アジアの外交慣例は「広義の国際法」(国際慣習法)であり、独島は日本の主張のように「無主地」だったのではなく、国境条約上朝鮮領土だったことが明確であるという研究が登場した。

在日独島研究者である朴炳涉「竹島=独島問題研究ネット」代表は、最近、学術誌『独島研究』23号に「独島領有権に対する近代国際法の適用問題」を掲載した。17世紀末、朝鮮と日本は鬱陵島の帰属をめぐる外交文書をやり取りして交渉をおこない、1699年に鬱陵島が朝鮮領土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いわゆる「鬱陵島争界」である。当時、両国は離島の帰属に関する判断基準として「どちらの政府が離島に領有意思を有しているのか」、「離島はどちらの国に近いのか」という二点を確立した。論文は「これは近代以前の‘広義の国際法’ということが出来る」と強調した。

実際、以後にも日本は日本で鬱陵島と独島の帰属が問題になるたびにこれらの基準によって朝鮮の領土と判断した。江戸幕府は独島に領有意思を持ったことがなかったし、地理的に独島は朝鮮の土地である鬱陵島に近いためである。明治時代に入っても、森山茂などが1870年に作成した「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を始めとして、このような判断に変化はなかった。

イ・ソンファン啓明大学教授も、同誌に載せた論文「朝日/韓日国境条約体制と独島」において「鬱陵島と独島は日本の領土ではないという1877年の日本太政官指令は、鬱陵島争界の結果として1699年に成立した韓日国境条約を日本国内法令にて受け入れたもの」としながら、「これを朝日/韓日国境条約体制と規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朴炳涉代表は、「日本は1905年に無主地を先占して独島を編入したと主張するが、独島は広義の国際法上韓国の領土であり、編入は無効」と強調した。

17세기 국제법 “독도는 조선 땅”

동아일보 조종엽기자입력 2018-01-10 03:00 수정 2018-01-10 03:00

박병섭 재일 독도 연구자 “1699년 한일 국경조약에 명시”

근대 이전 동아시아 외교 관례는 ‘광의의 국제법’ (국제관습법)이며, 독도는 일본의 주장처럼 ‘무주지’ 였던 것이 아니라 국경 조약상 조선 영토였음이 명확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재일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는 최근 학술지 ‘독도연구’ 23 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를 게재했다.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귀속을 두고 외교 문서를 주고 받으며 교섭해 1699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른바 ‘울릉도 쟁계’ 다. 당시 양국은 낙도(落島)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하는 두 가지를 세웠다. 논문은 “이는 근대 이전 ‘광의의 국제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실제 이후에도 일본은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들 기준에 따라 조선의 영토로 판단했다. 에도 막부는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 적이 없었고, 지리적으로 독도는 조선 땅인 울릉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모리야마 시게루 등이 1870년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를 비롯해 이런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도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조일(朝日)/한일(韓日) 국경조약체제와 독도’ 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1877년 일본 태정관(太政官) 지령은 ‘울릉도 쟁계’ 의 결과 1699년 성립된 한일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 이라며 “이를 ‘조일/한일 국경조약체제’ 로 규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박병섭 대표는 “일본은 1905년 무주지를 선점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였으며 편입은 무효” 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110/88098365/1#csidxedc03639af2c3679e9abd3b57bf72a9>